

RI 숫자 50 — 대상·단위·기산점을 함께 외우기

기준일 2026-10-12 · 누드 수험서 무료 자료

2026년 10월 12일 현행 기준. 숫자를 가리고 대상·단위·기산점까지 말해 보세요. 수정체 한도는 현행값을 수록했습니다.
시험 공고의 법령 적용일에 시행되는 규정을 확인하세요.

번호	묻는 대상	숫자·단위	함께 기억할 조건
01	종사자 유효선량·5년	100 mSv 이하	고정된 5년 구간의 합계
02	종사자 유효선량·1년	50 mSv 이하	5년 한도와 함께 충족
03	종사자 수정체 등가선량	연 150 mSv 이하	현행 시행령 별표 1 기준
04	종사자 손·발·피부 등가선량	연 500 mSv 이하	유효선량과 별도 비교
05	수시출입자·운반종사자 유효선량	연 6 mSv 이하	운반종사자는 비작업종사자 구분
06	수시출입자·운반종사자 수정체	연 15 mSv 이하	등가선량
07	수시출입자·운반종사자 손·발·피부	연 50 mSv 이하	등가선량
08	일반인 유효선량	연 1 mSv 이하	위원회 인정 예외는 별도
09	일반인 수정체 등가선량	연 15 mSv 이하	유효선량 1과 구별
10	일반인 손·발·피부 등가선량	연 50 mSv 이하	종사자 500과 구별
11	법정 5년 구간의 기산일	1998-01-01	이때부터 5년씩, 현재 2023~2027
12	임신 확인자 하복부 표면 등가선량	2 mSv 이하	확인 시점~출산, 합산식도 적용 ¹
13	임신 확인자 내부섭취	ALI의 1/20 이하	확인 시점~출산, 합산식도 적용 ¹
14	교정용 내장 밀봉 RI 수량	40 MBq 이하	구조·표지·선량률 조건도 충족
15	교정용 장치 사용 중 선량률	500 μSv/h 이하	시행규칙상 표면선량률 ²
16	교정용 장치 미사용 시 선량률	1 μSv/h 이하	사용 중 값과 구별 ²
17	그 밖의 신고 대상 일체형 장치	10 μSv/h 이하	고시 수량·구조 조건도 충족 ²
18	시행규칙상 표면선량률 측정거리	10 cm	운반물 표면·TI 측정과 구별
19	그 밖의 장치 신고 대상 수량	별표 5 제3란의 10,000배	방호기준 고시; 농도 제4란 아님
20	일반 경미 변경신고	변경 후 30일 이내	규칙 63조 1항 2호; 라목은 변경 전
21	일반 일시 사용장소 변경신고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개설과 구별

번호	묻는 대상	숫자·단위	함께 기억할 조건
22	투과검사 작업장 개설신고	이동사용 개시 15일 전까지	긴급 예외와 구별
23	긴급 투과검사 작업장 개설신고	이동사용 개시 5일 전까지	긴급 사유·증빙 등 요건 확인
24	투과검사 작업장 폐지신고	운영 종료 후 10일 이내	폐지확인서 등 첨부
25	취소·폐지 후 방호조치 신고	조치일부터 30일 이내	개인 퇴직일과 구별
26	여행·질병 등 관리자 대리	연간 30일 이내	부재 때마다 새로 30일 아님
27	출산휴가 때 관리자 대리	연간 90일 이내	대리자 자격·즉시 지정도 충족
28	후임 없는 해임·퇴직 때 대리	해임·퇴직일부터 30일 이내	정식 후임 선임과 연결
29	생산·사용 및 오염물 처리 기록	5년	별표 7 제8호 적용 대상 ³
30	일반 생산·사용시설 선량률 기록	5년	고정 차폐장소 예외와 구별 ³
31	일정한 차폐장소의 선량률 기록	10년	밀봉 RI·발생장치 해당 장소 ³
32	배기·배수 농도 기록	10년	기록 주기와 보존기간 구별 ³
33	관리구역 표면오염도 기록	10년	선량률과 다른 측정량 ³
34	수시출입자 피폭·건강진단 기록	5년	종사자는 사용 폐지 시까지 ³
35	일반 단일 운반물 TI 측정거리	표면에서 1 m	그 거리의 최대 선량률
36	일반 단일 운반물 TI 기본 산출	mSv/h 값 ×100	μSv/h 값이면 ÷10
37	TI의 영값 처리 경계	산출값 0.05 이하 → 0	그 밖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
38	제1종 백색 표면선량률 상한	0.005 mSv/h	TI 0도 함께 충족 ⁴
39	제2종 황색 표면선량률 상한	0.5 mSv/h	TI 1 이하도 함께 충족 ⁴
40	제2종 황색 TI 상한	1	표면선량률과 높은 등급 선택 ⁴
41	일반 제3종 황색 표면선량률 상한	2 mSv/h	전용운반 예외와 구별 ⁴
42	일반 제3종 황색 TI 상한	10	전용운반 예외와 구별 ⁴
43	운반물 총중량 외부 표시 기준	50 kg 초과	포장과 내용물 합계; 이상 아님
44	운반신고 대상 폐기물 부피	1.6 m ³ 이상	중·저준위폐기물; 다른 대상 별도
45	법정 운반신고 제출기한	운반 개시 5일 전까지	신고 대상 종류·수량 확인
46	자체처분 단반감기 예외	반감기 5일 미만	그 핵종만 포함+허용기준 충족
47	위 예외의 자체처분계획서	5년마다 제출 가능	일반 원칙은 처분 때마다 제출

번호	묻는 대상	숫자·단위	함께 기억할 조건
48	자체처분 실시기록 보존	처분일부터 5년	계획서 제출 주기와 구별
49	자체처분계획서 검토결과 통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자의 처분 완료기한 아님
50	농도 측정·평가 방법 사전검토 통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계획서 결과 통지와 구별

¹ 임신을 보고·통보하여 확인된 별표 1 제1·2호 대상자에게 적용. 하복부 표면 등가선량/2 mSv와 내부섭취량/(ALI/20)의 합도 1 이하. ² 신고 대상 판단에 쓰는 시행규칙의 정의로, 운반물 표면에서 재는 값과 다릅니다. ³ 신고사용자를 제외한 RI 생산·사용자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7 제8호. ⁴ TI와 표면선량을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95조, 시행령 별표 1·제82조의5·제107조·제108조, 시행규칙 제2조·제63~65조·제68조의5·제95조·제98조·별표 7 제8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0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0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별표 5.

이 자료는 무료로 나눠 드리는 맛보기입니다. 출처(누드 수험서)를 밝히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법령·기준은 시험 공고의 적용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